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0806 주택 부속토지 결정 및 재산세 부과처분 무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주택 부속토지 결정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주위적으로 무효, 선택적으로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경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5/1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라 한다)을 소유한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21. 7. 4. 이 사건 토지를 ○○○시 C 지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한 다음 지방세법 제119조에[1] 따른 소액 징수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0원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부과결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시 세정과 재산세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기재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부존재확인 또는 경정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듯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외관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재산세와 같은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방세법 제119조에

1)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따라 재산세 징수면제를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결정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부과결정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재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부과결정에 기초한 청구취지 기재 재산세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무효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부과처분이 유효임을 전제로 이를 주택이 아닌 토지로 본 재산세 부과처분으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주위적, 선택적, 예비적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택 부속토지 결정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주택 부속토지 결정'은 재산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재산세에 있어 토지와 주택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서로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지방세법 제104조,[2] 제105조[3]). 즉, 토지 중 주택에 부속한 것은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므로 재산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토지가 주택에 부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토지가 주택에 부속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를 위

2)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선택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02

[별 지]

목 록

1. ○○도 ○○○시 [] 대 7㎡ 중
 공유자 []의 지분 100분의 15 전부 (1.1㎡).